

#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  
발 의 자 : 이영실, 봉양순, 이정인,  
이병도, 김화숙, 김용연,  
김정태, 김기덕, 김광수,  
김혜련, 서윤기, 오현정,  
김소양, 김동식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장사무를 명확히 하고,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,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(안 제6조)
- 나.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2)
- 다.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5호 중 “한부모가족에 대한”을 “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7. 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
8. 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

제9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 유지의 의무)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  략)</p> <p>5. 청소년 <u>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6. · 7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</u> -----</p> <p>6. <u>미혼모 · 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</u></p> <p>7. <u>한부모가족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</u></p> <p>8. <u>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</u></p> <p>9. · 10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6조(비밀 유지의 의무)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(지원사업) 제8호를 신설함에 따라 위기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사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기대상 및 임신·출산·양육 각 사업의 지원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 - 제6조(지원사업) 제5호의 개정 및 같은조 제6호, 제7호의 신설 및 제9조의2(한부모가족의 날) 신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(붙임 참조)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
(제3조제1항제2호)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정책조사팀장	여차민
주 무 관	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